

2015.01.02

## **‘한·캐나다 FTA 1월 1일 발효’ - 새해 ‘11개국 FTA 효과’ 무역규모 확대 이끌어-**

우리나라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·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13일 FTA에 대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**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** 이는 칠레, 미국, 호주 등에 이은 11번째 FTA 공식 발효입니다.

\* 한·캐나다 FTA는 올해 3월 실질 타결하고 9월 22일 서명하였음

한·캐나다 FTA는 **양측이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**해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 캐나다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캐나다는 GDP 1조 8,000억 달러로 1인당 GDP가 5만 2,000달러에 달하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, 무엇보다도 중국,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으로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2015.01.02

## 주요내용

### 1. 양허 현황

#### □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

- ※ 품목수 기준 : (우리) 97.5%, (캐나다) 97.5%
- ※ 수입액 기준 : (우리) 98.4%, (캐나다) 98.7%

#### [공산품]

- 5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
- ※ 캐나다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9.6%, 수입액 기준 98.7%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
- ※ 우리는 10년내 품목수 기준 99.1%, 수입액 기준 99.7%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

#### [농산물]

-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86.7%, 수입액 기준 99.9%를 5년내 철폐
-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, TRQ, ASG, 계절관세, 장기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

### 2. 협정관세 적용

#### □ 협정 발효 적용시점

#### - 협정발효일 (15년 1월 1일)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

-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
-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

2015.01.02

## 주요내용

### 3. 원산지증명 방식

#### □ 발급방식

- **우리나라 : 자율발급**

#### □ 발급주체

- 자율발급 : 수출자 및 생산자
-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작성 및 서명
  -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
  - ②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
  -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

#### □ 원산지 신고서(증명서)의 유효기간

- **서명일부터 2년**
-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 가능

#### □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

- 포괄증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 (FROM ~ TO)
  -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
- **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**

#### □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

-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명서 면제